

감 사 결 과 보 고 서

- 국가 R&D 참여연구원 관리실태 -

2015. 5.

감 사 원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및 목적

그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집행과 관련한 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 집행 과정을 점검하여 건전한 연구비 집행 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 대상기관 및 감사 중점

대학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중심으로 참여연구원 연구비 지급 내역,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한 후 서울대학교 등 12개 국립 대학을 대상으로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 부당한 연구비 일괄관리 등으로 연구비를 편취·횡령하거나 부당 집행하였는지 여부와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감사 중점을 두었다.

3. 감사 기간·인원 등

이번 감사는 2014. 8. 25.부터 같은 해 9. 4.까지 감사인원 10명으로 7일간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같은 해 9. 15.부터 10. 17.까지 감사인원 28명(차출 7명 포함)으로 22일간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감사원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5. 5. 7. 감사위원회회의의 의결로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감 사 원 권 고

제 목 참여연구원 허위·부당 등록에 대한 점검방안 필요

소 관 청 미래창조과학부

관 계 기 관 미래창조과학부 본부

내 용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 R&D규정”이라 한다) 제12조 제6항에 따라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에서 연구개발비를 총괄 관리하는 데 대하여 매년 조사·평가하는 등 대학의 연구비 관리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국가R&D규정 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르면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연구수당 등은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만 지급하고,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원의 경우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전문기관에서는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고, 연구개발비의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중 일부를 추출하여 연구개발비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각 대학의 연구개발비를 총괄 관리하는 산학협력단에서는 학생연구원을 허위·부당하게 등록되지 않도록 학생연구원의 휴학·제적 여부 등을 확인

할 필요가 있고, 전문기관에서 일부 연구개발과제를 정산할 때에도 참여연구원의 취업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부당 등록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번 감사 중 확인한 결과 [별표] “참여연구원 허위·부당 등록 사례”와 같이 연구책임자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휴학·제적생 등을 학생연구원으로 등록하거나, 취업하여 연구에 참여하지 않거나 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사람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또는 부당하게 등록하여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그런데 각 대학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개발비를 총괄 관리하면서 학생연구원이 휴학하거나 제적되었는지 여부 등을 학적 DB¹⁾를 통해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연구책임자가 취업한 사람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면서 산학협력단에 이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²⁾ 산학협력단에서는 참여연구원의 취업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참여연구원의 허위·부당 등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없는 실정인데도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에서는 [표]와 같이 매년 연구개발과제 중 일부를 추출하여 연구개발비를 정산³⁾하면서 각 대학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참여연구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점검은 하지 않고 있다.

1)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학적 관리 시스템의 데이터

2) 대학별 연구비 관리 내부규정에 따르면 연구과제 협약 체결 후 연구책임자가 참여연구원 연구비 지급 청구를 할 때 취업연구원인지 여부를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하나 연구책임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이를 누락할 경우

3)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는 모든 연구과제를 정산하되 대부분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정산하고 일부 과제를 직접 정산

[표] 최근 3년간 전문기관 직접 정산 현황

(단위: 건, %)

정산연도 전문기관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정산과제	자체정산	정산과제	자체정산	정산과제	자체정산	정산과제	자체정산
한국연구재단	13,325	714	16,036	804	16,343	899	45,704	2,417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1,885	114	2,892	134	1,953	139	6,730	387
계	15,210	828	18,928	938	18,296	1,038	52,434	2,804

자료: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제출 자료

조치할 사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 ① 각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학생연구원의 휴학·제적 여부 등을 학적 DB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여 학생연구원이 허위·부당 등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 ② 전문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 중 일부를 추출하여 정산할 때에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참여연구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참여연구원의 허위·부당 등록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별표]

참여연구원 허위·부당 등록 사례

연번	대학명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허위·부당 등록 내용
1	전북대학교	A	·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휴학·졸업생을 학생연구원으로 허위 등록
2	전북대학교	B	·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제적·휴학·졸업생을 학생연구원으로 허위 등록
3	경북대학교	C	· 공공기관·민간기업 취업자를 학생연구원으로 부당 등록
4	충남대학교	D	· 공공기관·민간기업 취업자를 학생연구원으로 허위 또는 부당 등록
5	충남대학교	E	· 민간기업 취업자를 학생연구원으로 허위 등록
6	경북대학교	F	· 공공기관 취업자를 참여연구원으로 부당 등록
7	서울대학교	I	· 공공기관·민간기업 취업자를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
8	한국과학기술원	J	· 민간기업 취업자를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
9	경상대학교	L	· 공공기관 취업자를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
10	경상대학교	M	· 공공기관 취업자를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
11	부경대학교	N, O	· 군복무 중인 자녀를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
12	경상대학교	P	· 고등학교 교사, 학원강사 등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
13	부산대학교	R	· 국립대 조교, 중학교 교사를 참여연구원으로 부당 등록
14	부산대학교	S	· 공공기관 취업자를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
15	전남대학교	K	· 민간기업 취업자를 참여연구원으로 부당 등록
16	부산대학교	W	· 공공기관 취업자를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
17	경상대학교	X	· 고등학교 교사 등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

자료: 참여연구원 허위·부당 등록 사례 재구성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 등으로 연구비 편취 및 부당 집행

소 관 청 미래창조과학부 등 8개 기관¹⁾

관 계 기 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등 10개 기관²⁾

내 용

미래창조과학부 등 8개 기관에서 서울대학교 등 10개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과제 협약 등을 체결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R&D규정”이라 한다) 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르면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연구수당 등은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만 지급하고,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원의 경우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및 국가R&D규정 제19조와 제27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고, 연구개발비의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현장검증 등을 통하여 부당하게 집행

1)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2)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충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부경대학교, 강원대학교

한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며,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들은 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거나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사람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부당 등록하여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고, 해당 연구책임자 등 관련자에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국가 R&D 참여연구원 관리실태” 감사 중 점검한 결과, 서울대학교 등 10개 대학교 소속 24명이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로서 [별표 1] “참여연구원 연구비 부당 지급·집행 연구과제 내역”과 같이 국가연구개발과제 등을 수행하면서 [별표 2] “참여연구원 연구비 부당 지급·집행 사례”와 같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참여연구원으로 부당 등록하여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는가 하면,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일괄 관리하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등 8개 기관장³⁾**은 참여연구원을 허위·부당 등록하여 연구비를 지급받거나, 연구비를 부당하게 일괄관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연구책임자 등 관련자에 대해 「과학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중소기업청장

기술기본법」 제11조의2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